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82
----------	-------

발의연월일 : 2026. 8. 6.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윤상현
이현승 · 구자근 · 최수진
최보운 · 김대식 · 김성원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면서 해양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계획에 해양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수산부의 사무로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

한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9호).

법률 제 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9호 중 “지원”을 “지원,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u>지원</u> 등에 관한 사항	9. ----- <u>지원</u> , <u>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지</u> <u>원</u>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